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31
----------	------

발의연월일 : 2017. 9. 13.

발의자 : 주광덕 · 권성동 · 정성호
장석춘 · 정갑윤 · 정유섭
윤상직 · 윤재옥 · 유재중
장제원 · 이명수 · 강석호
윤상현 · 정운천 · 엄용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 등을 위하여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준 2018년 3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2조제2항).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을 “2021년”으로 한다.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2018년”을 각각 “202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u>2018년 3월 1일</u>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생략)</p> <p>② 이 법 시행으로 <u>2018년 3월 1일</u>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u>2018년 2월 28일</u>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u>2018년 2월 28일</u>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u>2018년 3월 1일</u>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p>	<p>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p> <p>제1조(시행일) -----</p> <p>-----.</p> <p>-----</p> <p>-----2021년-----</p> <p>-----.</p> <p>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2021년</u>-----</p> <p>-----</p> <p>-----</p> <p>--<u>2021년</u>-----</p> <p>-----</p> <p>-----</p> <p>-----<u>2021년</u>-----</p> <p>-----</p> <p>-----<u>2021</u>년-----</p> <p>-----</p> <p>-----</p> <p>-----.</p>